

1. 개정이유

「화물차법」·「교통안전법」 개정('22.1.28.시행)으로 운행제한단속원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, 지방청 내 교통안전팀을 신설하고 인원 배정(54명) 하였으나 지역·거리 등에 따른 단속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그에 따른 복무관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지방청 내 교통안전팀인원을 국토사무소로 재배치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국토관리원 관리규정 [별표 1, 운행제한단속원 정원표] 개정

- 각 지방청 의견을 반영하여 교통안전팀 소속 운행제한단속원을 국토사무소 인원으로 정원 재배치
- 기능직(공무원) 및 청원경찰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정원표에서 삭제
-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개정('22.12.27)에 따른 소속 국토사무소 명칭 변경 사항 반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특기할 사항 없음

국토교통부훈령 제1629호

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운행제한단속원 정원표

구 분	운행제한 단속원(공무직)
계	608
서울청	0
수 원	53
의정부	26
원주청	0
홍 천	28
강 릉	26
정 선	23
대전청	5
논 산	29
충 주	22
보 은	22
예 산	31
익산청	0
광 주	36
남 원	22
순 천	33
전 주	40
부산청	9
대 구	44
진 주	30
영 주	28
포 향	57
김 해	44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	개 정	
(별표1)					(별표1)	
구 분	운행제한단속원				구 분	운행제한 단속원(공무직)
	계	기능직	청원경찰	공무직	계	608
	788	70	116	608	서울청	0
서울청	12	0	0	12	수 원	53
수 원	65	6	10	47	의정부	26
의정부	40	3	13	20	원주청	0
원주청	10	0	0	10	홍 천	28
홍 천	28	2	4	24	강 릉	26
강 릉	24	3	3	23	정 선	23
정 선	25	3	3	20	대전청	5
대전청	10	0	0	10	논 산	29
논 산	26	3	5	25	충 주	22
충 주	34	6	7	21	보 은	22
보 은	32	3	8	22	예 산	31
예 산	48	2	6	31	익산청	0
익산청	10	0	0	10	광 주	36
광 주	46	3	8	31	남 원	22
남 원	29	3	4	19	순 천	33
순 천	43	3	2	32	전 주	40
전 주	61	3	12	39	부산청	9
부산청	12	0	0	12	대 구	44
대 구	57	3	2	43	진 주	30
진 주	57	3	15	30	영 주	28
영 주	47	3	4	28	포 향	57
포 향	78	9	5	56	김 해	44
진 영	48	9	5	43		